

2014년 유아보호용장구(카시트) 무상보급 안내

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 중인 유아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아보호용장구(카시트)를 무상보급합니다.

2014년 무상보급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가정에 카시트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.

❶ 보급제품 및 일정

▶ 보급 카시트 제품 안내

- 무상보급 수량 : **600대** (제품사양: 체중 4 - 18kg의 유아용)
- 신청 대수: **한 가정에 1대**(쌍둥이일 경우, 최대 2대까지 신청 가능)
- 비용 : 무료
※ 택배비는 본인 부담(착불)

▶ 추진일정

구분	일정	내용
온라인 접수	4/10(목), 10:00~ 4/16(수), 18:00	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(www.childsafe.or.kr)를 통해 신청
서류제출 대상자 발표	4/18(금), 13:00	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
서류접수	4/21(월) ~ 4/25(금)	우편접수 ※ 마감일(4/25) 소인까지 유효
증빙서류 심사	4/22(화) ~ 4/29(화)	증빙서류 확인
최종선정자 발표	4/30(수), 10:00	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
카시트배송	5/1(목) ~	

※ 상기 모든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❷ 신청자격

▶ 신청자격: 아래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

- ① 전국 3세 이하(2012년~2014년 출생)의 자녀를 둔 가정
- ② 배기량 2,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(승합, 화물, 외제차량 제외)
- ③ 선정기준(1~6순위)에 해당하는 가정

▶ 선정기준 : 신청자격 중 아래 순위에 기준하여 선정하도록 함.

1순위	▪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▪ 기초생활수급자 가정
2순위	▪ 차상위계층 가정 (자활급여, 장애수당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우선돌봄 수급권자) ▪ 저소득 한부모 가정
3순위	▪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
4순위	▪ 장애인(장애등급 1급 또는 2급) 가정 ▪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
5순위	▪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(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)
6순위	▪ 세 자녀 이상 가정

※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

다음의 경우 **신청 자격이 없거나** 신청을 하더라도 **자동취소 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**

1. 기존(2005년~2013년) 카시트사업에 선정되어 보급 또는 대여 받은 기록이 있는 가정 (이미 반납한 가정도 포함)
2. 기간 내(2014. 4. 21~25)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
(제출서류 미비 / 부적합한 증빙서류 제출)
3. 출산예정자(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자녀만 인정)
4. 한 가구에서 다른 신청자명으로 중복신청을 한 경우
5. 보급되는 카시트가 장착 불가능한 차량일 경우
 - (1) 안전벨트가 없는 좌석이 있는 차량
 - (2) 뒷좌석에 3점식 안전벨트가 없는 차량
 - (3) 자동안전벨트가 있는 좌석이 있는 차량 (자동적으로 장착 탈착 타입의 안전벨트)
 - (4) 좌석의 앞면 폭 깊이가 45cm이하의 좌석이 있는 차량

❶ 신청방법

▶ 신청절차

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 확인	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카시트보급사업 안내문 확인
↓	
온라인 접수 [4/10~4/16]	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(www.childsafe.or.kr)에서 신청서 작성 및 약관, 개인정보 동의 ※ 4/16(수), 18:00 접수 마감
↓	
서류제출 대상자 발표[4/18]	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(문자, 이메일)
↓	
서류접수 [4/21~4/25]	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우편발송 (마감일 소인까지 유효) ※ 각 서류 상단에 신청자명 /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/ 연락처 기재 (기재하지 않는 경우,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서류 미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) ※ 우편 착오로 인한 미접수 방지를 위해 등기 우편 이용
↓	
증빙서류 심사	증빙서류 확인 (모든 증빙서류가 확인되어야 최종 선정됨) ※ 작성한 신청서 내용과 동일해야하며, 서류가 미비되거나 부적격자, 허위신청자일 경우 탈락될 수 있음
↓	
최종선정자 발표[4/30]	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(문자, 이메일) ※ 모든 서류가 확인된 최종 선정자는 개별 통보 후 카시트 발송 ※ 배송료는 본인부담(착불) ※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배송되므로 추후 주소 변경이 불가함. (주소변경 등 이중배송으로 발생하는 추가 운송요금은 본인 부담) ※ 도서, 산간 지방은 별도 요금 추가 발생

❷ 증빙서류

※ 온라인 접수 후, 개별 통보받은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

①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(필수)

- ※ 신청자, 자동차소유자, 선정기준 해당자, 카시트 사용자녀가 함께 등재되어있는 등본
- ※ 동거가족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

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(필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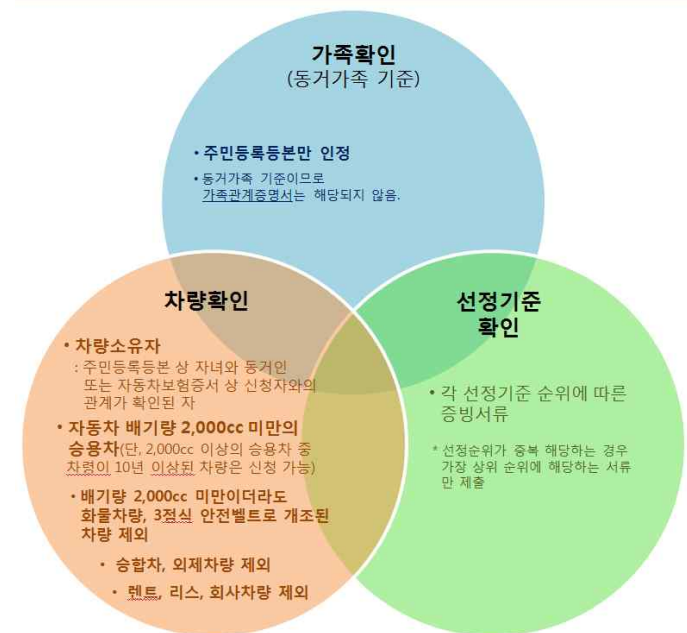
- ※ 자동차등록 원부는 해당되지 않음

③ 선정기준 증빙서류 1부(필수)

- ※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및 발급기관은 아래 ★참고

④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1부(해당자에 한 함)

- ※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르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 아닐 경우
- ※ 자동차보험증서상에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계, 또는 지정운전자로 확인되어야 하며,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(ex. 부부한정, 가족한정은 해당되지 않음)



★ 선정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

선정기준		제출서류	발급기관
1 순 위	▪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	별도 증빙서류 없음 -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-	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가정 확인
	▪ 기초생활수급자 가정	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의료급여 1, 2종 사본 가능)	주민자치센터 (읍·면·동)
2 순 위	▪ 차상위계층 가정 (자활급여 장애수당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우선돌봄 수급권자)	다음 중 발급 가능한 서류 1가지	•자활근로자확인서 •장애(아동)수당수급자 확인서 •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
			주민주치센터 (읍·면·동)
	▪ 저소득 한부모 가정	한부모가족증명서	국민건강보험공단
3 순 위	▪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	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보상금확인원 (생활조정수당자 표기 - 담당자 자필 서명 확인)	주민주치센터 (읍·면·동)
4 순 위	▪ 장애인(장애등급 1급 또는 2급) 해당 가정	장애인 등록증 (장애인 카드 사본 대체 가능)	각 지방 보건청
	▪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	희귀난치성질환자 (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증 또는 H카드 사본)	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
5 순 위	▪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(입양축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)	입양사실확인서	해당 입양기관
6 순 위	▪ 세 자녀 이상 가정	별도 증빙서류 없음 -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-	-

※ 선정 기준이 중복된 경우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기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
※ 3개월 이내(2014년 1월 이후)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

(차량등록증, 자동차보험증서, 4·5순위 서류는 제외)

※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의 경우 H카드의 등록일과 만료일 확인
(만료일이 초과되었을 경우 선정되지 않음)

※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 이외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

※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후라도 서류위조사항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예정이며,
기보급된 카시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조치

※ 보급 카시트 판매 금지

- 보급되는 카시트는 대여제품이 아니므로 반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- 단, 공익목적으로 보급되는 물품이므로 매매, 유상양여, 교환, 물품 변형 사용을 금하
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무상 보급된 카시트를 반환하거나
제품평가액(납품가액)을 보상할 의무를 지님
- 각 제품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며,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보를 통해 적발·조치